

윤리실천 행동지침

●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또는 수령

-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기부, 후원, 증여)에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을 개인적으로 주고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 요구 또는 그런 행위를 약속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해서도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과도한 향응, 접대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임의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
- 본인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무분별하게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 채무의 면제, 상환, 보증 및 금전 등의 거래금지

- 이해관계자와는 업무 이외에 사적인 부분에서 금전 거래(채무의 면제, 상환, 보증 등)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에게 부당 요구 금지**
- 이해관계자에게는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는 사적인 부탁, 의뢰(상품판매, 보험 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

● 정보보안 준수

-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사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2019.1.1 시행법령기준)

- 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상의 적용 대상자(배우자도 포함)에게 직무수행, 사고, 부조 목적에 한해서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 경조비는 5만원 이하(화환 및 조화 포함시 10만원)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청탁금지법 상의 적용 대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게 청탁하거나, 부정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 선물은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
- * 축의금·조의금 5만원을 내면서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함께 보내는 것은 가능



음식물 3만원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선물 5만원
금전,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금지)



경조사비 5만원
축의금·조의금

● 성희롱 금지

- 회사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반드시 수강하고,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여 주는 행위, 외모 등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회사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등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부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 :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또는 단체, 종업원, 거래선, 협력회사,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등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방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법무컴플라이언스팀에 확인한다.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했을 때에는?

1. 먼저 직속상사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상담)합니다.
2. 직속상사 또는 부서장에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윤리법령준수위원회 사무국에 보고(상담)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그 행동은,

- 공평하고 공정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동료나 가족이 이해하고 찬성해 줄 수 있는가?
-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 도레이 그룹의 경영이념이나 행동규범에 맞는가?
- 사회의 양식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 법률에 적합한 것인가?

도레이 그룹의 행동규범 Mission BEAR

도레이그룹은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4가지 행동규범(B.E.A.R)을 책정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p>Be fair, be honest and have integrity 공평, 정직, 그리고 굳건한 마음</p>	<p>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여러 동기와 압박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올바르게 바랄 수 있습니다.</p>
<p>Encourage respect and communication 존중과 소통</p>	<p>주위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는 태도로 자신이 주위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의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p>
<p>Adopt a "genba" approach look to the facts! 현장주의</p>	<p>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알아차리고 최적의 대응이 가능합니다.</p>
<p>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our excellent company Excellent Company의 일원으로서의 책임</p>	<p>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우리 사회 속에서 도레이 그룹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우리의 결정은 남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p>

도레이첨단소재 Mission BEAR 선언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굳건한 마음

- B** 부정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E** 생방향 소통, 공감적 경청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A**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문제의 공유·공동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R**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에게 끊임없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윤리실천 미니 가이드북



상담 및 제보 창구

[상담]

기업윤리법령준수위원회 사무국

✉ ethics@torayamk.com

☎ (본 사) 02-3279-1101

(사업장) 054-479-6111

법무컴플라이언스팀

✉ compliance@torayamk.com

[제보창구]

🏠 HUB 내 녹색제보, 윤리법령 게시판 내 Hotline

✉ 성희룡 관련 제보: hello@torayamk.com